고용노동부

보도참고자료

휴먼뉴딜 한국판뉴딜

보도일시	2021. 12. 9(목) 배포 즉시 / 총 7쪽		
담당부서	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	과 장 김동현 사무관 남성욱	044-202-7554 044-202-7557

< 본 자료는 http://www.moel.go.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 >

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 도입

◈ **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」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('21.12.9.)에 따라 퇴직연금제도(DC·IRP)에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 제도)가 도입**

*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시행('22년 6월 중, 잠정)

◈ **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으로 퇴직연금의 효율적 운용과 수익률 제고를 통해 근로자 수급권 보장 및 노후소득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**

□ **내년부터 퇴직연금에 사전지정운용제도**(디폴트옵션 제도)**가 도입된다.**

○ 오늘(12.9)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」 개정안은 흔히 **디폴트옵션**이라고 불리는 제도를 **퇴직연금에 도입**한 것으로, 근로자들이 **운용방법을 지정하지 못하는 상황**에서 **사전에 정해둔 운용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**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.

〈도입배경〉

○ **근로자가 직접 운용**하는 **확정기여형**(DC형)**퇴직연금제도**와 **개인형 퇴직연금제도**(IRP)에 **사전지정운용제도**(디폴트옵션 제도)가 **도입**된다.

○ 그간, **저금리가 지속되는 환경**에서도 근로자의 무관심, 금융 전문성 부족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퇴직연금 적립금은 **대부분**(약 89%) **원리금보장상품으로 운용**되고 있었다.

○ 이로 인해 최근 5년간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1%대에 머무르고 있으며, **근로자 수급권 보장에 저해요인**이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,

- 정부는 **수익률 제고**를 도모하여 **근로자 수급권 보장을 강화**하기 위해 **사전지정운용제도**(디폴트옵션 제도)가 **도입을 추진했다.**

○ **사전지정운용제도**(디폴트옵션 제도)는 퇴직연금제도 운영경험이 풍부한 미국, 호주, 영국 등 선진국에서 **가입자의 적절한 선택을 유도하여 노후소득보장을 강화**하는 것이 정부의 사회적 책무라는 인식하에,

- **적극적으로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가입자**를 위해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다.

* 미국 '06년, 영국 '12년, 호주 '13년에 도입 (장기투자 적합펀드 등으로 구성),

- 실제 선진국들이 운영하고 있는 사전지정운용방법(디폴트옵션)은 **연평균 6~8%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유지**하고 있다.

〈사전지정운용제도 개요〉

○ **사전지정운용제도**(디폴트옵션 제도)는 **확정기여형**(DC형)**퇴직연금제도·개인형 퇴직연금제도**(IRP)에서 가입자(근로자)의 **운용지시가 없을 경우** 가입자가 **사전에 정해 놓은 방법**으로 퇴직연금을 **운용**하는 제도이다.

○ 퇴직연금사업자는 **고용노동부장관 소속 심의위원회**의 **사전심의**와 **고용노동부 승인**을 거쳐 **사전지정운용방법**(디폴트옵션)을 마련하며,

- **원리금보장상품 혹은 집합투자증권(펀드)으로 구성***이 가능하다.

* 원리금보장상품과 펀드를 혼합한 상품도 가능. 펀드는 TDF(Target Date Fund), BF(Balanced Fund) 등 법령상 규정되어 있는 운용내용이 명시 되어야 함

○ **기업**은 **퇴직연금사업자**가 제시한 **사전지정운용방법**(디폴트옵션)을 **근로자대표 동의를 거쳐**(퇴직연금규약 반영) **도입**하고,

- **근로자**는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**사전지정운용방법**(디폴트옵션) 관련 **정보**를 **제공 받아** 그중 **하나의 상품**을 **본인의 사전지정운용방법**(디폴트옵션)**으로 지정**하게 된다.

- 이때,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 의사 반복 확인 및 **손실가능성 등에 대해 명확히 설명**하는 등 근로자 보호 절차를 지켜야 한다.

○ **사전지정운용방법**(디폴트옵션)은 근로자가 **❶운용지시를 하지 않거나 ❷사전지정운용방법**(디폴트옵션)으로의 운용을 **원하면 적용**하게 된다.

❶ 운용지시 없이* **4주 경과**시 **사전지정운용방법**(디폴트옵션)으로 운용됨을 **통지**받고, **통지 이후**에도 별도의 운용지시 없이 **2주 경과**하면 **사전지정운용방법**(디폴트옵션) **적용**(총 6주 소요)

* 최초 계약시 운용지시 없는 경우 또는 기존 운용상품의 만기도래시 운용지시 없는 경우

❷ 근로자가 **직접** 운용지시를 통해 **퇴직연금을 운용**하다가 **사전지정운용방법**(디폴트옵션)으로 **전환**하려는 **의사**가 있을 경우 **사전지정운용방법**(디폴트옵션) 운용 가능**(opt-in)**.

○ 또한, **사전지정운용방법**(디폴트옵션)으로 운용 중에도 **근로자의 의사**에 따라 **언제든지 원하는 다른 방법**으로 **운용지시가 가능하다. (opt-out)**

○ **사전지정운용방법**(디폴트옵션)의 **선택권 보장**과 **퇴직연금사업자 간 경쟁** 제고를 위하여 고용노동부가 **운용현황·수익률** 등을 **공시한다.**

〈합리적 수수료 부과체계 마련〉

○ 그간, 퇴직연금 수수료는 적립금액에 비례하여 부과되어 수익률이 저조하더라도 금융기관의 수입은 감소하지 않기 때문에 수익률 제고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인이 부족하였다.

* **2020년 한해 동안** 퇴직연금사업자(금융회사)의 퇴직연금 **수수료 수입은 약 1조 700억원 수준**

○ 고용노동부는 이에 적립금액뿐 아니라 가입자 **운용수익** 및 **양질의 서비스, 비용** 등이 연동되어 **가입자 이익이 향상되는 수수료 체계**를 하위법령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.

〈기대효과〉

○ **근로자**의 퇴직연금이 보다 **효율적으로 운용**됨으로써, **수익률이 제고**되어 **근로자 노후소득재원 확충에 큰 도움**이 될 수 있을 것으로 **예상되며,**

- 엄격한 승인제도와 모니터링 등을 통해 퇴직연금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여 **퇴직연금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**할 것으로 보인다.

○ 또한, 합리적 수수료 부과체계 마련을 통해 퇴직연금사업자가 **근로자의 수익률 제고와 양질의 서비스 제공**을 위해 보다 노력할 것으로 기대한다.



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남성욱 사무관(☎044-202-7557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

붙임1 사전지정운용방법(디폴트옵션) 운용상품 예시

1) 펀드(집합투자증권)에 의한 사전지정운용방법(개정안 예시)

※ 펀드상품으로 사전지정운용방법 지정 시 ①TDF 혹은 ②BF가 반드시 하나이상 포함되어야 하며, 원리금보장상품과 펀드상품을 혼합한 상품도 구성 가능

① **Target Date Fund(TDF)**: 투자목표시점이 사전에 결정되고 **운용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투자위험이 낮은 자산의 비중을 증가**시키는 방향으로 자산배분을 변경하는 방법

② **Balanced Fund(BF)**: 채권, 주식 등의 자산에 분산하여 투자하되, 금융시장 상황, 시장 전망 및 펀드 내 **가치변동 등을 고려**하여 **주기적으로 자산배분을 조정**하는 방법

③ **Stable Value Fund(SVF)**: 1년 미만 단기금융상품등에 투자하여 손실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단기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방법

④ **SOC Fund:**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공공투자계획, 사업 등에 따른 **사회기반시설사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**를 통해 운용방법

⑤ 기타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방법

2) 원리금이 보장되는 유형 예시

① **예·적금(은행):** 은행 등 금융회사가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금전의 보관과 운용을 위탁받고, 그 대가로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 지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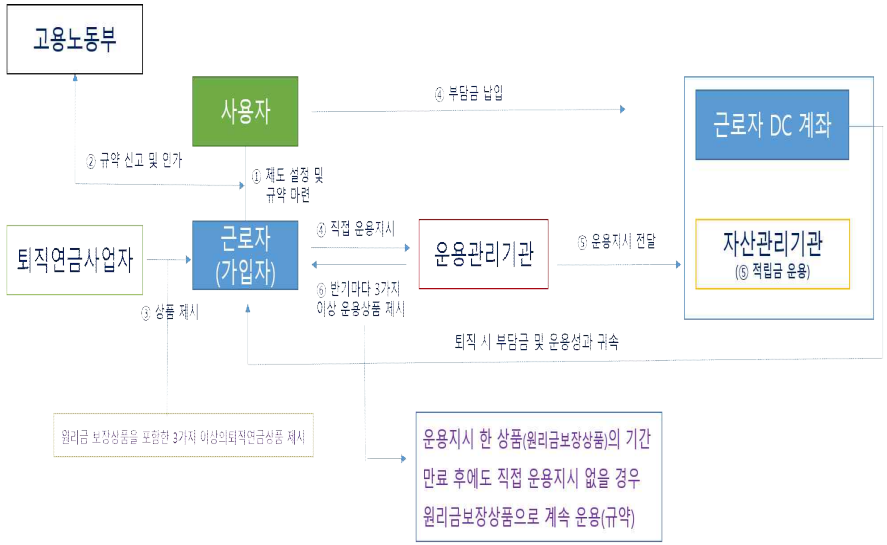
② **최저이율보증보험(보험사, GIC):** 보험회사가 최저이율을 보증하는 저축성 보험계약으로 예금과 실질은 유사하나 형식은 보험계약 형태

③ **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(증권사, ELB: Equity Linked Bond):** 기초자산(코스피 등 특정 지수, OO전자와 같은 특정 주식 등)의 변동성에 수익률을 연계한 채권으로,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지급하는 수익률도 약정에 따라 변동되나, 원금은 보장되는 형태의 채권

붙임2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 제도) 운영 절차

	개 정 안
제도 설정 (제19조제1항 제4호의2)	근로자대표의 동의 등을 통해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 제도) 관련 사항을 규약에 반영(법 시행 후 1년 이내 반영)
↓	
디폴트옵션 상품 승인 및 규약 반영 (제21조의2 제1항 본문 및 제2항, 제3항, 제19조 제1항)	1) 퇴직연금사업자가 원리금보장상품, TDF, BF 등 사전지정운용방법(디폴트옵션) 상품을 노동부에 신청 → 고용노동부장관 소속 사전 심의위원회를 통해 승인* * 파생상품 등 고위험상품 금지, 우량상품 승인 취지에서 요건을 마련 : 손실가능성과 예상수익이 중·장기적으로 합리적 균형을 이루고 수수료 등의 비용이 예상되는 수익에 비해 과대하지 아니한 운용방법 2) 고용노동부로부터 승인 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(디폴트옵션)을 사용자에게 설명 →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통해 사전지정운용방법(디폴트옵션, 복수가능)을 규약에 반영 3) 사용자가 사전지정운용방법(디폴트옵션)을 추가한 규약 및 증빙자료를 노동부에 신고
↓	
상품 제시 (제21조의3 제1항)	퇴직연금사업자는 규약에 반영된 사전지정운용방법(디폴트옵션)에 대한 정보 (운용구조 및 손실가능성 포함)를 가입자에게 제공 -
↓	
근로자 운용지시 (제21조의3 제2항)	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공 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(디폴트옵션) 중 근로자가 직접 사전지정운용방법(디폴트옵션)을 사전지정, 근로자 직접 운용 지시
↓	
운용방법 기간만료 (제21조의3 제3항)	1) 상품의 운용기간 만료 후 4주 동안 근로자의 운용지시 없을 경우, 퇴직연금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사전지정운용방법(디폴트옵션)으로 운용될 수 있음을 통지* * 사전지정한 사전지정운용방법(디폴트옵션)의 운용구조, 손실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 2) 통지 후에도 2주동안 운용지시 없을 경우 사전지정운용방법(디폴트옵션)으로 운용
↓	
운용지시변경 (제21조의3 제4항)	사전지정운용방법(디폴트옵션)으로 운용되더라도 근로자가 희망하면 언제든지 원리금보장상품을 포함한 원하는 방법으로 운용지시 가능(OPT-OUT)
수수료 (제21조의2 제1항, 제29조의2)	1) 사전지정운용방법(디폴트옵션)에 대한 승인절차를 통해 합리적인 수수료 관리 2) 가입자 이익 보호를 위해 퇴직연금전반의 수수료가 합리적으로 부과되도록 비용과 운용수익등이 반영된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이를 준수토록 함
사후관리 (제21조의3 제6항)	사전지정운용방법(디폴트옵션) 승인 후에도 운용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승인취소 등의 사후관리

< 현행 DC제도 운용방법>



< 사전지정운용제도 운영 절차>

